

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(설치) 지역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,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회관 (이하 “여성회관”이라한다)을 둔다

제2조 (위치) 여성회관은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~17번지에 둔다.

제3조 (업무) 여성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
2.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
3.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는 위탁교육 실시
4. 여성 정보자료실 운영
5. 여성기술 인력 양성
6. 각종 시설물 대여사업
7.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

제4조 (관장)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도 감독한다.

제5조 (공무원) 여성회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 (시설사용료 및 수강료) ① 여성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설물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기술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관장은 여성회관에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와 기술교육, 전문교육 시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한다.

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와 수강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기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

④ 시설사용의 경우 부득이 사용자가 형편에 의거 날짜와 시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야 한다

제7조 (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)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강당, 강의실 및 기타 시설물의 사용료와 기술교육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
2.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시

3.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 모자세대

② 전문교육의 수강료 면제는 도 여성회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에 한하며,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면제는 동일기관·단체에 대하여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.

제8조 (위탁관리)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.

제9조 (위탁교육) ①관장은 각급 공공기관, 기업체 또는 단체등에서 요구하는 과목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 할수 있다.

②제1항의 위탁교육신청은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허가를 득하고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요금을 징수한다.

제10조 (강사초빙) ①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 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